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66호서식]

○ ○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

제 호 . . .

수 신: 공소청의 장 (검사:)

제 목: 구속영장 신청서(미체포)

다음 사람에 대한 0000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(구속장소)에 구속하려 하니 0000.00.00.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피의자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직 업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주 거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변 호 인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필요적 고려사항</td><td colspan="5">[] 범죄의 중대성 [] 재범의 위험성
[] 피해자·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
[] 기타 사유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</td><td>수통 신청 여부</td><td></td><td>신청 영장 통수</td><td></td><td>동시집행 필요성</td><td></td></tr>
<tr><td>신청 취지·사유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비 고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/table>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수사관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